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7,068,239	9,212,047
일반회계		259,050,455	7,771,514
특별회계		48,017,784	1,440,534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8,208,475	1,146,2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336,488	550,09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871,987	596,160
	기타특별회계	9,809,309	294,279
	주택사업특별회계	6,600	1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43,549	31,306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62,094	4,86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72,067	20,162
	공업단지특별회계	911,327	27,34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09,532	198,2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1,062	10,532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15,768	473
	기반시설특별회계	37,310	1,119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92,43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